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021. 2. 2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기대
(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

□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내용 통보기간 산정과 소위원회 의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부의 제도 운영
기준과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내용을 일부 조문에 수정·반영하였으며,
평가업자 신고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내용 통보기간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